G-15 : 법무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Ⅰ. 일 반 사 항

1. 소송의 의의

소송이란 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라는 대립적인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하고, 원고와 피고의 공격. 방어에 대하여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2. 소송의 종류

1) 민사소송

사인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로 원고와 피고의 대립된 당사자에 의하여 진행된다

2) 형사소송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형사소송이라 한다.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부(存否)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3)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촵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4) 기타소송

혼인, 이혼, 친자관계의 문제등 신분에 관계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가사소송,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문제가 된 경우의 세무 소송, 특허 관계가 문제가 된 경우의 특허 소송 등이 있다. 행정소송과 기타소송은 민사재판의 절차에 각 사건마다의 특성에 따른 수정이 가해진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3. 법원과 관할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재판권의 분장관계(分掌關係)를 정해놓은 것으로써 어느 법원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정해놓은 것을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의 종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관할(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과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직근상급법원이 정하는 지정관할(재정관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과 피고의 응소에 따라 발생하는 응소관할등이 있으며, 아울러 소송법상의 효과의 차이에 따라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나누어진다.

- 직분(職分)관할 : 재판작용의 차이를 표준으로 분장관계를 정해 놓은 것.
  (판결절차는 수소(受訴)법원에서,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법원에서 정해놓은 것)
- 사물(事物)관할 : 제 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의 사건의 차이에 따라 재판권의 분장을 정한 것.(소가(訴價)에 따른 지정, 수표어음금청구사건등)
- 토지(土地)관할 :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에 대한 소송사건의 분장관계를 정한 것. (자연인: 주소지->거소지(居所地) ->최후의 주소지. 법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지정(指定)관할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직근상급법원의 관할법원지정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 (관할법원이 법률상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때)
- 합의(合意)관할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
- 응소(應訴)관할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
- 전속(專屬)관할 : 재판의 적정, 공정등 고도의 공익적요구에 기하여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것 .(직분관할과 사물, 토 지관할 중 법률이 전속관할로 정한 것)
- 임의(任意)관할 : 당사자간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임)

4. 상소(불복) 제도

우리 나라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사실심인 1심(지방법원)과 2심(지방법원본원항소부와 고등법원), 그리고 법률심인 3심(대법원)을 두어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복신청을 상소(上訴)라고 하며, 상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항소(抗訴) :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 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항고(抗告) : 판결을 제외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5. 재판부의 종류

1) 단독재판부

단독재판부란 1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하며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건을 심리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금5,000만원 이하인 사건, 어음. 수표금청구사건 등을 담당하며, 형사소송의 경우 단기형이 1년 미만인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단독재판부가 담당한다.

다만, 소가(소송물가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다.

2) 합의재판부

합의재판부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하여, 단독사건이 아닌 경우와 제 2심 재판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언제나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대체로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형사의 경우 단기형이 1년 이상인 범죄사건의 경우 합의재판부가 담당한다.

6. 소송의 주체

1) 당사자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원고)하거나 제기당한자(피고)로서 언제나 당사자 본인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2) 소송대리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은 지배인등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의 1심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자(친족이나 피용자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Ⅱ. 민사소송진행절차

1. 소송제기(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을 작성한 후 소가(청구취지금액)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한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2부 제출)

[민사소송 인지첨부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1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원
- 10억원 미만 : 소가 * 40 /10,000 + 55,000원
- 10억원 이사 : 소가 * 35/10,000 + 555,000원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으로,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소장부본송달(피고)

법원은 원고로부터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로 하여금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사건의 집중심리를 위하여 준비명령을 발하며, 사건접수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 피고를 소환한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응소하여 방어하고자 할 경우 답변서를 작성하여 최초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는 상대방 수에 따른 부본(원본을 복사하거나 베낀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으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답변서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제자백(擬制自白)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제:성질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법률상 같은 효과를 주는 것)

3. 변론기일의 지정

변론기일 또는 증거 조사 기일 등은 재판장이 실시 연원일 및 개시시각과 장소를 밝혀서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지정된 기일을 통지하는데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이후의 변론기일은 그 직전 변론기일에서 지정하는데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 기일을 고지(알려주는 것)한 때에는 소환장을 송달할 필요 없이 소환의 효력이 생기고, 불 출석한 당사자에 대하여만 별도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한다.

감정실시등의 원인으로 다음 기일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변론기일을 추후에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이를 약칭하여 추정이라고 부른다.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변경신청이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변론기일의 실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하게 되며 변론을 통하여 법원에 의한 사건의 심리가 진행된다. 변론이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송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원 피고의 주장 및 답변은 공격. 방어방법을 지재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실상 구술심리주의는 유명무실해지고 서면주의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변론 기일이 실시되면 법원서 기관 또는 서기는 변론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조서에는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과 소송절차의 경과를 모두 기재하게 된다.

● 변론기일의 해태

- 당사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한다.
- 변론기일에 당사자쌍방이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때,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에 다시 당사자 쌍방이 불 출석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쌍불취하간주)

● 준비서면의 작성

-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송서류를 말한다.
- 준비서면의 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상대방 수에 따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준비서면에는 주요한 사실상의 주장과 증거의 신청, 법률상의 주장을 기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 법률적 견해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야 하며, 필요하면 참고서적과 판례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

5. 소송의 종결

1) 판 결

소송이 제기되어 당사자 쌍방의 공격. 방어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내용에 대한 심증을 얻은 경우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장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시한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재판장은 공개법정에서 판결원본에 기하여 판결주문만 낭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판결선고일로부터 2 주일 전후하여 판결정본이 원. 피고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2) 소의 취하

소의 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로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소송은 종결된다.

피고가 응소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취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청구의 포기가 있으면 소송은 종료된다.

청구의 인낙(認諾)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청구의 인낙이 있으면 소송은 종료된다.

4) 소송상의 화해

소송상 화해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판결의 확정

1) 판결확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 상소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도과시킨때.

-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를 취하하였을 때.
- 상소각하판결이 있거나 상소각하명령이 있는 때.
- 상소권을 포기한 때
-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판결선고시.
- 상고심 판결선고시

2) 판결이 확정되어야 소송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소송당사자는 그 판결에 기한 기판력, 집행력등을 주장하거나 등기신청등을 할 수 있다.
(기판력: 확정판결에 의하여 한번 재판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전의 판결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

3) 판결이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판결송달증명 및 잽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개실 할 수 있다.

7. 간이재판제도

1)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이란 소가(소송물가액) 2천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기일도 1회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서 법원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한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3) 제소전 화해

개인간의 일반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 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시키는 것을 제소전 화해라고 한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계속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화해인 점에서 소송계속 중에 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소송상의 화해와 구별된다.

화해가 성립되면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어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집행력을 가진다.

Ⅲ. 형사소송진행절차

1. 형사소송의 의의

형사소송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중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소송으로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절차를 요약하면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을 거쳐 교도소등에서 형이 집행한다.

참고로 형벌권 중 유죄를 인정하는 권한과 형을 결정하는 권한은 판사에게 있고, 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2. 형사소송법상 적용되는 원칙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 단, 이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검사가 상소하거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검사동일체의 원칙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검사는 검찰권 행사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복종 관계에서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검사는 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3) 영장주의 원칙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고 구속한 경우 구속취소, 구속적부심사, 항고, 준항고등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수 있고, 불법구속중에 얻어낸 자백이나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불법구속한 자는 불법체포감금죄가 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영장의 제시없이 압수, 수색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 영장주의의 예외

현행범의 체포와 긴급체포시에는 사전에 구속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구속영장없이 체포한 경우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석방하여야 함)

4) 고소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의 공범중 1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똑같이 효력이 적용된다는 원칙

5) 증거재판주의 원칙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6)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한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

7) 일사부재리의 원칙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차 기소, 심리, 판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

3. 검사의 권한

1) 수사권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권한과 수사가 개시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있다.

검사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거나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권한이 있고, 급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없이도 체포,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권한이 있다.

2) 공소권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형벌을 과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의 제기라고 하며,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 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은 검사가 독점(기소독점주의)한다. 또한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권한으로서 검사는 범죄자를 용서하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기소편의주의)

3) 형집행권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의 결과 형이 확정되면 검사는 그 형을 집행한다.

4. 검사가 수사한 결과 취할 수 있는 종국결정의 유형

1)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구공판(정식재판청구), 구약식(약식재판청구), 기소유예처분, 소년일 경우는 소년부송치 처분등을 함.

(기소유예처분: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의 선처요구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말함)

2)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을 처분함.

5. 형사사건에서의 사람의 지위의 변천과정

1) 용의자 : 범죄행위의 의심이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 사람.

2) 피의자 : 범죄용의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내사가 진행되어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입건)되는 경우의 용의자.

3) 피고인 : 피의자를 검사가 법원에 기소할 경우의 기소된 피의자

4) 수형인 :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

6. 형사소송절차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식기소와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기록, 증거서류 등에 대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약식기소이다.

1) 정식 기소한 경우(정식재판)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이 되게 되고 법원에서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식재판은 판사의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으로 시작한다. 인정신문은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피고인의 성명, 직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을 묻게 된다

(2) 검사의 모두진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생략하고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에 바로 검사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한다.

(3) 변호인이 있으면 검사의 신문에 대응하여 변호인이 피고인을 반대 신문 또는 보충신문을 하고,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4) 증거조사는 피고인이 자백할 때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조사하고,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인부 또는 동의여부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밝히게 된다.

(5) 모든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되면 검사는 의견진술과 구형을 하며, 검사의 구형에 대항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후진술과 변론을 한다.
(6) 이상의 절차가 마쳐지면 결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정한 후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2) 약식기소한 경우(약식재판)
(1) 검사는 법에 벌금형 또는 과료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해당할 경우 대부분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한다. 실무상 검사는 약식 기소할 경우 는 미리 벌금을 예납토록 하고 있다.
(2)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판사가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여 결정한다.
(3) 약식기소된 결과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게 된다.
(4) 피고인이 약식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며,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5)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가 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료된 경우는 예납한 벌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즉결심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사항 등 기타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한다.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즉결심판도 7일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면 확정되며,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7.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

1) 수사단계에서의 석방제도

● 체포적부심
체포되어 있는 자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판하여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영장없이 체포가능한 시간은 48시간에 불과하므로 거의 실익이 없다.

● 구속영장의 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심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접 심문하는 것을 실질심사라고 하며, 실질심사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다.

● 구속적부심사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우 구속적부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석방을 명하는 제도임

2) 기소후의 석방제도

● 보 석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허가할 경우 석방될 수 있으나, 그 후 도주하거나 공판정에 불출석하게 되면 보석허가결정은 취소되고 다시 구속되며, 보석보증금은 몰수된다.

● 구속의 집행정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부모님이 상을 당한 경우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대개 일정한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일시 석방할 수 있다.

● 구속 취소

구속 중에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 검사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 친고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

● 판 결

재판결과 피고인에게 무죄, 면소(免訴), 형의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하고 즉시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 면 소 : 공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 선고유예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

- 집행유예 : 유죄를 인정한 정황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

8. 형의 종류

1) 사형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으로서 반드시 교수형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2) 징역

일정기간 죄인을 교도소등 수형시설에 감금시키고 정역을 부과하는 형으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1월이상 15년 이하)으로 구분된다.

3) 금고

일정 기간 죄인을 교도소 등 수형시설에 감금시키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으나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4) 자격상실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이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

5) 자격정지

자격상실에서 규정한 자격을 1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키는 형

6) 벌 금

재산형의 일종으로써 형벌로써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을 벌금이라고 한다.

7) 구 류

죄인을 1일 이상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경찰서유치장, 구치소등에 감금하는 형벌

8) 과 료(科料)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죄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나 금액이 2 천원이상 5 만원 미만이다.

* (참고사항)

- 과태료(過怠料, 過料))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행정벌로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경우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징벌을 말한다.

- 과징금(過徵金)

과태료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행정벌인점은 동일하나 의무사항의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을 흡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징벌을 말한다.

9. 전 과

일단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기록이 보관된다.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자료표가 작성되고 최종 처분내용까지 기재하게 된다.수사자료표는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그러한 사실이 기록될 뿐 삭제나 말소되지 않는다. 재판의 결과형을 받게 되면 수형인이 되며, 형을 받은 사람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검찰청에서 수형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형인 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로 보내어 관리하게 된다. 벌금 이하의 형(벌금, 구류, 과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형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사자료표,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를 합하여 전과기록이라고 한다.

우리가 전과를 말소한다고 하는 것은 수형인 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 명표를 폐기한다는 것이며,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람에 대하여는 수사 자료표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 100 만원까지 부분 10%
- 200 만원까지 [10만원 + (소가 100만원) * 9/100]
- 300 만원까지 [19만원 + (소가 200만원) * 8/100]
- 400 만원까지 [27만원 + (소가 300만원) * 7/100]
- 500 만원까지 [34만원 + (소가 400만원) * 6/100]
- 1,000만원까지 [40만원 + (소가 500만원) * 5/100]
- 3,000만원까지 [65만원 + (소가 1,000만원) * 4/100]
- 5,000만원까지 [145만원 + (소가 3,000만원) * 3/100]
- 1 억원까지 [205만원 + (소가 5,000만원) * 1/100]
- 1 억초과 [255만원 + (소가 1억원) * 0.5/100]